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			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국	도	시	분
2000	사회개발비	2,308,006	2,250,203	57,803	[국 22,954	도 3,495	시 9,197	분 22,157]
2200	보건및생활환경개선	2,308,006	2,250,203	57,803	[국 22,954	도 3,495	시 9,197	분 22,157]
2210	보건	2,308,006	2,250,203	57,803	[국 22,954	도 3,495	시 9,197	분 22,157]
2213	오정구보건소운영	2,308,006	2,250,203	57,803	[국 22,954	도 3,495	시 9,197	분 22,157]
100	경상예산	526,023	518,680	7,343				
110	인건비	382,621	375,278	7,343				
	101 인건비	382,621	375,278	7,343				
		60,945	53,602	7,343	02 수당			
					◎초과근무수당			7,343
					●6급			
					경정(8,165원X5명X28시간X12월)-기정(8,036원X5명X25시간X12월)			= 1,664
					●7급			
					경정(7,325원X6명X28시간X12월)-기정(7,210원X6명X25시간X12월)			= 1,790
					●8급			
					경정(6,564원X10명X28시간X12월)-기정(6,461원X10명X25시간X12월)			= 2,673
					●기능10급			
					경정(5,326원X4명X28시간X12월)-기정(5,242원X4명X25시간X12월)			= 868

과 목		예산액	기정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기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●계약직 경정(9,652원X1명X28시간X12월)-기정(9,652원X1명X25시간X12월) = 348
200	사업예산	1,781,983	1,731,523	50,460	[국 22,954 도 3,495 시 1,854 분 22,157]
210	보조사업	1,682,662	1,632,202	50,460	[국 22,954 도 3,495 시 1,854 분 22,157]
	201 일반운영비	178,234	141,546	36,688	
		178,234	141,546	36,688	01 일반운영비 ◎금연클리닉 운영 경정(23,600,000원)-기정(26,800,000원) = △3,200 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(국) 11,800 - 13,400 = △1,600 (시) 11,800 - 13,400 = △1,600 ◎보건소 건강생활실천 사업비 경정(63,500,000원)-기정(24,500,000원) = 39,000 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(국) 31,750 - 12,250 = 19,500 (시) 31,750 - 12,250 = 19,500 ◎만성질환관리사업 권역별 교육과정 운영비 경정(2,824,000원)-기정(2,516,000원) = 308 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(국) 1,412 - 1,258 = 154 (시) 1,412 - 1,258 = 154 ◎방문보건자원봉사자관리 운영비 = 1,000 (도) 500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(시) 500
					◎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건강진단 사업홍보비 경정(0원)-기정(420,000원) = △420 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(국) 0 - 210 = △210 (시) 0 - 210 = △210
	301 일반보상금	43,980	44,980	△1,000	
		3,000	4,000	△1,000	10 행사실비보상금 ◎방문보건자원봉사자 관리비 경정(3,000,000원)-기정(4,000,000원) = △1,000 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(도) 1,500 - 2,000 = △500 (시) 1,500 - 2,000 = △500
	307 민간이전	1,355,408	1,344,836	10,572	
		1,146,156	1,117,656	28,500	01 의료및구료비 ◎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경정(47,500,000원)-기정(67,500,000원) = △20,000 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(국) 19,000 - 27,000 = △8,000 (도) 14,250 - 20,250 = △6,000 (시) 14,250 - 20,250 = △6,000 ◎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경정(121,000,000원)-기정(72,500,000원) = 48,500 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(국) 96,800 - 58,000 = 38,800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(시) 24,200 - 14,500 = 9,700
		121,644	89,992	31,652	02 민간경상보조 ◎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경정(114,844,000원)-기정(83,192,000원) = 31,652 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(도) 34,453 - 24,958 = 9,495 (분) 80,391 - 58,234 = 22,157
		87,608	137,188	△49,580	05 민간위탁금 ◎보건소 건강생활실천 사업비 경정(0원)-기정(40,000,000원) = △40,000 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(국) 0 - 20,000 = △20,000 (시) 0 - 20,000 = △20,000 ◎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경정(0원)-기정(10,000,000원) = △10,000 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(국) 0 - 8,000 = △8,000 (시) 0 - 2,000 = △2,000 ◎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건강진단 홍보비 = 420 (국) 210 (시) 210
	405 자산취득비	104,200	100,000	4,200	
		104,200	100,000	4,200	01 자산 및 물품취득비

과 목		예산액	기정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기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◎가상음주체험용 장비구입비(보건소건강생활실천사업)
					= 1,000
					(국) 500
					(시) 500
					◎금연클리닉 장비구입
					= 3,200
					(국) 1,600
					(시) 1,600
부 서 합 계		2,308,006	2,250,203	57,803	